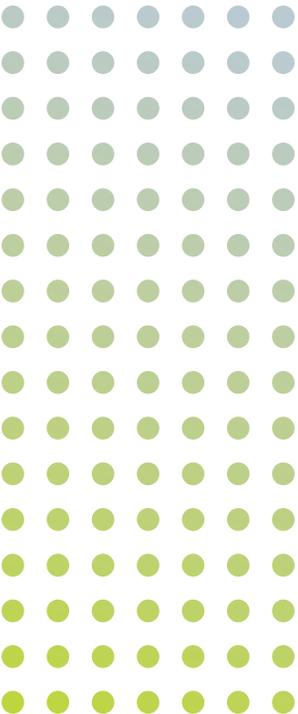


# 주거취약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사회적 지원망 조사

박찬임

KLI



한국노동연구원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2장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	3
제1절 통계조사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실태 .....	3
1. 거처 유형에 따른 지역 및 인구학적 특성 .....	3
2. 노동시장 특성 및 소득수준 .....	7
3. 거처와 관련된 의견 .....	10
제2절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 .....	18
1. 쪽방의 개념과 현황 .....	18
2.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처리 방식 .....	19
3.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 .....	25
4. 평 가 .....	27
제3장 주거취약 노동자의 건강 및 노동시장 특성 .....	29
제1절 조사 개요 .....	29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상황 .....	31
1.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공간 .....	31
2. 경제적 상태 .....	34
제3절 근로실태 .....	37
1. 근로실태 .....	37
2. 주로 하는 일자리의 특성 .....	41

3. 일과 관련한 폭력, 차별 경험 .....	46
제4절 건강 및 질병 여부 .....	47
1.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질병여부 .....	47
2.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과 absentism .....	49
3. 우울증 .....	50
제5절 사회적 관계 및 생활습관 .....	52
1. 사회적 관계 .....	52
2. 생활습관 .....	53
제6절 우울증 결정요인 .....	56
제4장 요약 및 제언 .....	59
참고문헌 .....	61

## 표 목 차

<표 2- 1>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주된 거처 유형(전국) .....	4
<표 2- 2> 주택 이외의 거처 유형의 지역별 차이 .....	4
<표 2- 3>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가구 형태 .....	5
<표 2- 4>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가구주 성별 .....	6
<표 2- 5>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가구주 연령 .....	6
<표 2- 6>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가구주 학력 .....	7
<표 2- 7>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	8
<표 2- 8>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 중 가구주가 일하지 않은 이유 .....	9
<표 2- 9>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 .....	10
<표 2-10>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현 거처 거주 시작시기 .....	11
<표 2-11>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현재 거처 선택이유 (복수응답) .....	12
<표 2-12>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가 현재 거처에서 겪는 어려움 (복수응답) .....	13
<표 2-13>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현재 거처에서 계속 거주의사 여부 .....	13
<표 2-14>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가 현재 거처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유 .....	14
<표 2-15>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유주택 거주의사 .....	15
<표 2-16> 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 중 기초보장제도 수급여부 .....	16
<표 2-17>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에 가장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복수응답) .....	17

<표 2-18>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 중 현 거처를 쪽방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	17
<표 3- 1> 설문 의 구성과 내용 .....	30
<표 3- 2> 설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	31
<표 3- 3> 제5차 근로환경조사 중 40대 이상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 .....	32
<표 3- 4> 설문 응답자의 주거공간 및 가구특성 .....	33
<표 3- 5> 한국복지패널 저소득가구의 가구 특성 .....	34
<표 3- 6> 가구 소득의 구성과 수준 .....	35
<표 3- 7> 장애 및 기초보장 수급여부와 정부 소득보조 여부 .....	36
<표 3- 8> 빛이 있는지 여부 .....	36
<표 3- 9> 수입과 균형을 맞추는 일의 난이도 .....	37
<표 3-10>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38
<표 3-11> 밤 근무 여부 및 횟수 .....	40
<표 3-12> 근로소득의 구성과 수준 .....	41
<표 3-13> 주평균 근로시간과 일자리 갯수 .....	42
<표 3-14> 현재 주로 하는 일(중복응답) .....	43
<표 3-15> 현재 주로 하는 일의 종사상 지위(중복응답, 정부 일자리 제외) .....	43
<표 3-16> 현재 주로 하는 일의 비정형성(중복응답) .....	44
<표 3-17> 일자리의 보수 계산방식과 지급주기, 지급방식 (복수응답) .....	44
<표 3-18> 출퇴근 실태 .....	45
<표 3-19> 폭력 및 차별 경험여부 .....	46
<표 3-20> 전반적인 건강상태 .....	47
<표 3-21>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른 한 달 근로시간 .....	48
<표 3-22> 의사의 진단을 받는 질병과 치료경험 .....	49
<표 3-23> 건강문제로 결근한 경험 여부 .....	49
<표 3-24>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 여부 .....	50

<표 3-25>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일수 .....	50
<표 3-26> 우울증 여부 .....	51
<표 3-27> 지난 1주일 중 하루 종일 남과 대화하지 않은 날이 있는지 여부 .....	52
<표 3-28>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논 상대 .....	52
<표 3-29>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즐거워할 상대 .....	53
<표 3-30> 흡연 여부 .....	54
<표 3-31> 음주 횟수 .....	54
<표 3-32> 하루에 먹는 끼니 수 .....	55
<표 3-33> 하루 외식 횟수 .....	55
<표 3-34> 하루 끼니와 외식 횟수 .....	56
<표 3-35>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57
<표 3-36> 우울증 결정요인 .....	58



## 요 약

본 연구는 도심의 주거기준 미만의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단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던 중장년 1인 노동가구의 삶과 생활에 관심을 둔다. 이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1인 가구인 이들은 누구와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 몸과 마음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등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다. 아직까지 이들의 생활 및 지원망과 관련된 연구 및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을 촉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통계를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를 위한 주거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통계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조사시점 현재 전국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8,0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거처의 유형과 거주 여건 23개 문항, 주거비 부담 및 이주 계획 4개 문항, 주거복지 관련 현황 및 수요 7개 문항, 가구 기본사항 8개 문항 등 총 42개 문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를 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약 37만 가구이며, 49%는 일터(공장, 상점, 농장, 여장 등)의 일부 공간이나, PC방, 만화방, 기원, 찜질방 등 기타 거처에서 지내고 있었고, 41%는 고시원·고시텔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8.2%는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지내고 있었고, 나머지 1.8%는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수도권에 51.5%, 비수도권에 48.5%가 거주하고 있었다.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는 1인 가구가 72%,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27%, 남남으로 구성된 가구가 1%로 나타났으며,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거의 90%가 일터 등 기타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남성 고령 가구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시원·고시텔 거주자는 고학력이 상당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편이었다. 취업률은 79% 정도로서, 일터의 일부 공간 등 기타 거처에서 생활하는 경우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고 이는 기타 거처 생활자에서 높았는데, 이들 중 재산이나 기술을 가진 진성 자영업자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남의 일을 해주지만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급 등의 형태로 일을 해주거나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쪽방이라 불리는 거처의 건물은 통상 일반주택, 여관, 여인숙, 고시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일반주택을 개조한 차고, 버려진 축사, 공장의 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이다. 쪽방으로 불리는 거처의 대부분은 무보증의 월세, 사글세 혹은 일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2006년 노숙인 쉼터 입소자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2007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업 대상을 노숙인 복지시설(쉼터) 거주자와 쪽방 거주자로 나누어 운영하였지만, 2010년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으로 변경하면서, 주거지원 대상을 쪽방과 쉼터 거주자 이외에도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 등으로 확대하고,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사업도 통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쪽방 거주민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쪽방 등을 필요로 하거나 그 이상의 주택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주거복지정책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저렴 주거에서 임대주택으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곳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최근 시작한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은 쪽방 자체를 주거자원으로 인정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로 의미가 있다. 다만 임대기간과 시가 목표한 기대효과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감소로 인한 생활개선, 인근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 측면에서 미흡하다. 또한 쪽방의 철거나 폐쇄로 인한 주거상실을 포함해 다양한 사유로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거주민을 지원하는 주거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제3장에서는 주거취약 노동자의 노동시장 특성과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지역의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이면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9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 정부지원 관련사항, 주거 관련사항, 현재 하는 일, 직업력, 폭력 및 차별 경험, 건강 및 사회적 관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은 성별·연령, 학력 등 응답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과 가구원 수 및 가구특성, 소득원, 가구소득 등 가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지원 여부, 의료보장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주거 관련 사항은 현재 사는 곳의 시설·설비, 거주기간, 임대료, 계약서, 전입신고, 지불방법, 이주의향 및 이주 시 원하는 주거형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주와 관련된 내용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들이 하는 일은 건설일용직이 21.9%, 경비/청소/관리 등 17.1%, 운전/배달/퀵서비스/대리기사 등 17.1%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식당일이나 돌봄 노동, 단순조립 생산직 등을 하고 있었다. 일한 날수를 보면 한 달 평균 16.1일 정도 일하고 있었으며,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환산해보면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25.9%, 일은 하지만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이 52.9%,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21.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환경조사에서 40세 이상 취업자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1.4시간이고, 주 40시간 미만 일한 사람의 비중이 12.4%에 불과

한 것과 대조된다.

일하는 사람 중 25.6%가 밤 근무를 했다고 응답했고, 밤 근무를 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0% 가까이가 15일 이상 밤 근무를 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직업을 살펴보니 경비, 시설관리, 청소,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택시기사 등 밤 근무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근로환경조사에서 40대 이상 취업자의 밤 근무 여부를 살펴본 결과 밤근무를 한다는 응답은 10%로 훨씬 적게 나타났다. 밤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한 달 중 밤 근무일수는 15일 미만이 62%로 고시원·쪽방 거주 취업자에 비해서 다소 적게 나타났다.

시간당 근로소득을 구해본 결과 시간당 평균 시급은 9,721원이고, 근로소득자 중 36.1%는 최저시급 미만의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급이 13,000원을 넘는 경우는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긍정적(‘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인 응답을 한 비중은 41.4%였고, 보통이 25.6%, 부정적(‘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인 응답이 33.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근로환경조사의 40세 이상 취업자의 응답과는 많이 다르다. 근로환경조사의 응답을 보면 긍정적인 응답(매우 좋다+좋은 편이다)이 66%이고, 부정적인 응답(나쁜 편이다+매우 나쁘다)은 4.3%에 불과하였다. 즉, 일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고시원·쪽방 거주 취업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데도 힘겹게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1/3 정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1 장 서 론

2018년 11월 서울 종로의 한 노후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심의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시생이 아니라 중장년의 생계형 일용노동자들로서 1인 가구로 일터에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화재 후 서울시에서는 이들에게 도심 외곽의 거주지를 마련해주었지만 대부분은 새로 마련된 외곽의 숙소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였던 근처의 다른 고시원으로 숙소를 옮겼다고 한다. 이는 저소득 1인 중장년 가구의 생활과 이들에 대한 주거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시원 거주자 중 상당수는 중장년의 생계형 일용노동자였다. 이들은 모두 1인 가구로 일터에 가까운 도심의 저렴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 사이였다. 고시원은 처음에는 고시생들이 숙식과 공부하는 공간으로 생겨났지만 점차 주거형태가 바뀌어 요즘에는 비용이 저렴한 생활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사실상 ‘쪽방촌’으로 여겨진다.<sup>1)</sup> 고시원, 옥탑방, 지하방, 그리고 최저기준 이하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국민이 전체의 10%를 넘는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폭염과 폭서에 그대로 노출되어 건강을 잃기 쉽고, 화재에 취약해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간 저소득층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빈곤선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자, 빈곤탈출, 여성가장 등 주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

1) 세계일보, 11월 9일자 인터넷판.

## 2 주거취약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사회적 지원망 조사

두고 있었다. 자력으로 노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비록 저소득층이고 비거주시설에서 단신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들의 삶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는 몇몇 사회인구학적인 문제를 중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중고령 1인 저소득 가구는 일자리 유무에 따라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가족 구성원 등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생활과 삶에 대하여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졌던 중장년 1인 노동가구의 삶과 생활이다. 이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1인 가구인 이들은 누구와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등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다. 아직까지 이들의 생활 및 지원망과 관련된 연구 및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을 촉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심의 주거기준 미만의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단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장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 제1절 통계조사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실태

통계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조사시점 현재 전국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일반가구<sup>2)</sup>를 대상으로 8,0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거처의 유형과 거주 여건 23개 문항, 주거비 부담 및 이주 계획 4개 문항, 주거복지 관련 현황 및 수요 7개 문항, 가구 기본사항 8개 문항 등 총 42개 문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를 보면 주거취약계층의 일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 1. 거처 유형에 따른 지역 및 인구학적 특성

전체적으로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 수를 보면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비닐하우스, 고시원·고시텔, 기타 가구에 사는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37만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처 유형은 기타 거처 약 18만 가구로서 전체의 49%가 이에 해당되었는데, 기타 거처란 일터(공장, 상점, 농장, 어장 등)의 일부 공간이나, PC방, 만

2)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4 주거취약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사회적 지원망 조사

화방, 기원, 찜질방 등의 거처를 말한다. 다음은 고시원·고시텔로 약 15만 가구가 이에 해당해서 전체의 41%를 차지하였다.

주택 이외 거처의 지역을 보면 수도권인 경우가 19만여 가구이고, 비수도권인 경우가 17만 9천여 가구로 수도권에 51.5%, 비수도권에 48.5%가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처 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당히 달랐다. 수도권의 경우는 비주택 거처 19만여 가구 중 고시원·고시텔이 13만여 가구로 6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일터 등 기타인 경우가 26.2%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비주택 거처 약 18만 가구 중 일터의 일부 공간에 머무는 등 일터 등 기타 유형에서 거처하는 경우가 13만여 가구로서 73.1%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2만여 가구로 13.3%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에서의 주거비용 상승 및 주거난으로 인하여 고시원·고시텔이 취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생·고시생들의 주거공간이 되고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력을 구하면서 일터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생활하도록 하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1〉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주된 거처 유형(전국)

(단위: 가구, %)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고시텔	일터 등 기타	합계
합계	30,299 (8.2)	6,651 (1.8)	151,495 (41.0)	181,055 (49.0)	369,501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표 2-2〉 주택 이외의 거처 유형의 지역별 차이

(단위: 가구, %)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고시텔	일터 등 기타	합계
수도권	6,657 ( 3.5)	3,043 (1.6)	130,658 (68.7)	49,829 (26.2)	190,186 (100.0)
비수도권	23,849 (13.3)	3,586 (2.0)	20,801 (11.6)	131,079 (73.1)	179,315 (100.0)
합계	30,506 ( 8.3)	6,629 (1.8)	151,459 (41.0)	180,908 (49.0)	369,501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 유형별로 가구 형태를 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이 70%를 넘었지만, 거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고시원·고시텔과 숙박업소의 객실이 거처인 경우는 1인 가구의 비중이 92%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판잣집·비닐하우스의 경우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60% 이상이었고, 기타 일터의 일부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인 경우와 1인 가구의 비중은 동일하게 48.9%로 나타나서, 가족과 같이 일터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 중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약 10만 가구인데, 이 중 거의 90%가 일터 등 기타 거처에서 생활한다고 할 수 있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성별을 보면 남성이 27만여 명, 여성이 9,700여 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73.5%로 높았다. 거주 유형별로 가구주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고시원·고시텔의 경우 32.4%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숙박업소 객실의 경우 17.0%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나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40세 미만인 경우가 37.2%, 4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가 34.4%, 60세 이상인 경우는 28.4%로 나타났다. 거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경우가 72.3%인 고시원·고시텔에 거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비중은 판잣집·비닐하우스의 경우는

〈표 2-3〉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가구 형태

(단위: 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1인 가구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 가구	합계
숙박업소의 객실	2,402 ( 7.9)	28,009 (92.1)	0 (0.0)	30,411 (100.0)
판잣집·비닐하우스	4,013 (60.8)	2,588 (39.2)	0 (0.0)	6,601 (100.0)
고시원·고시텔	3,637 ( 2.4)	147,006 (97.0)	909 (0.6)	151,553 (100.0)
일터 등 기타	88,478 (48.9)	88,478 (48.9)	3,981 (2.2)	180,936 (100.0)
합계	99,396 (26.9)	265,302 (71.8)	4,804 (1.3)	369,501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6 주거취약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사회적 지원망 조사

〈표 2-4〉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가구주 성별

(단위: 가구, %)

	남자	여자	합계
합계	271,665 (73.5)	97,836 (26.5)	369,501 (100.0)
숙박업소의 객실	25,265 (83.0)	5,185 (17.0)	30,450 (100.0)
판잣집·비닐하우스	4,890 (73.5)	1,761 (26.5)	6,651 (100.0)
고시원·고시텔	102,418 (67.6)	49,114 (32.4)	151,531 (100.0)
일터 등 기타	139,092 (76.9)	41,776 (23.1)	180,868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표 2-5〉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가구주 연령

(단위: 가구, %)

	40세 미만	40~60세 미만	60세 이상	합계
합계	137,590 (37.2)	127,144 (34.4)	104,766 (28.4)	369,500 (100.0)
숙박업소의 객실	2,988 ( 9.8)	15,650 (51.4)	11,839 (38.8)	30,477 (100.0)
판잣집·비닐하우스	236 ( 3.5)	1,711 (25.7)	4,714 (70.8)	6,662 (100.0)
고시원·고시텔	109,545 (72.3)	32,096 (21.2)	9,848 ( 6.5)	151,489 (100.0)
일터 등 기타	24,820 (13.7)	77,688 (43.0)	78,365 (43.3)	180,873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70.8%로 압도적이었고, 일터의 임시거처에서 기거하는 등의 기타 거처인 경우에도 43.3%, 숙박업소의 객실인 경우도 38.8%로 나타났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학력을 보면 대학교 재학 이상인 경우가 4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졸 34.0%, 중졸 이하 22.4%로 나타나서 비교적 고학력이었다. 그러나 이는 고시원·고시텔에 사는 대학생 및 고시생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거처 유형별로 보면 고시원·고시텔 거주자의 경우 대학교 재학 이상자의 비중은 67.6%로 높았지만, 기타 일터의 일부 공간에서 기거하는 경우나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기거하는 경우는 대학교 재학 이상자의 비중이 20%대였으며, 판잣집·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그 비율은 8%대에 머물렀다.

〈표 2-6〉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가구주 학력

(단위: 가구, %)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이상	합계
합계	82,768 (22.4)	125,630 (34.0)	161,102 (43.6)	369,501 (100.0)
숙박업소의 객실	10,279 (33.8)	13,563 (44.6)	6,569 (21.6)	30,411 (100.0)
판잣집·비닐하우스	3,881 (58.8)	2,165 (32.8)	554 ( 8.4)	6,601 (100.0)
고시원·고시텔	9,699 (6.4)	39,404 (26.0)	102,450 (67.6)	151,553 (100.0)
일터 등 기타	58,804 (32.5)	70,746 (39.1)	51,386 (28.4)	180,936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 2. 노동시장 특성 및 소득수준

주택 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취업상태인 경우가 79.2%로 나타났다. 거처 종류별로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기타로 응답한 경우가 87.4%로 가장 높았으며, 고시원·고시텔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73% 이상이 취업상태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라는 응답이 가장 낮은 거주형태는 판잣집·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취업하고 있다는 응답이 57.1%였다. 이렇게 비주택 거주자의 취업률이 생각보다 높은 상황은 기타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일터의 일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고시원·고시텔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도의 알바라도 하여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처지가 대부분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거유형별로 종사상 지위를 보면 고시원·고시텔 거주자 중에서는 상용근로자(42.9%), 임시·일용근로자(25.4%) 등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68% 이상이었지만, 일터 등 기타 거처 거주자 중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57.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이 주로 비수도권의 일터 등에 딸린 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임을 감안한다면,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사람 중 재산이나 기술을 가진 진성 자영업자가 별로 없으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이들은 남의

〈표 2-7〉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일하였다				일하지 않았다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자활·공공 근로자/무급 가족종사자	
숙박업소의 객실	19,092 (62.7)	3,928 (12.9)	11,601 (38.1)	3,197 (10.5)	365 (1.2)	11,358 (37.3)
판잣집·비닐하우스	3,798 (57.1)	505 ( 7.6)	991 (14.9)	2,235 (33.6)	67 (1.0)	2,853 (42.9)
고시원·고시텔	111,678 (73.7)	65,007 (42.9)	38,489 (25.4)	7,880 ( 5.2)	303 (0.2)	39,853 (26.3)
일터 등 기타	158,079 (87.4)	36,716 (20.3)	17,002 ( 9.4)	103,456 (57.2)	904 (0.5)	22,789 (12.6)
합계	292,645 (79.2)	106,047 (28.7)	67,988 (18.4)	117,132 (31.7)	1478 (0.4)	76,856 (20.8)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일을 해주지만 임금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급 등의 형태로 일을 해주거나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농가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자의 경우 취업률은 57.1%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가장 높은 것과 연관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가구주가 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하였고, 고령·질병·장애 등 신체적 사정이거나 육아·간병·가사 등 가정의 사정이 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학업·취업 준비가 41.6%로 나타났다.

거처 유형별로 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시원·고시텔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응답이었다. 고시원·고시텔의 경우는 학업·취업 준비로 인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지만, 다른 거처에 사는 경우는 고령·질병·장애·육아·간병·가사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고, 여기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일하지 못한

〈표 2-8〉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 중 가구주가 일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가구, %)

	일자리 찾지 못함	고령·질병· 장애·육아· 간병·가사	학업/취업 준비	일하고 싶지 않음/ 기타	합계
합계	8,070 (10.5)	34,355 (44.7)	31,972 (41.6)	2,459 (3.2)	76,856 (100.0)
숙박업소의 객실	2,124 (18.7)	8,609 (75.8)	352 ( 3.1)	273 (2.4)	11,358 (100.0)
판잣집·비닐하우스	288 (10.1)	2,460 (86.2)	60 ( 2.1)	46 (1.6)	2,853 (100.0)
고시원·고시텔	3,547 ( 8.9)	7,253 (18.2)	27,937 (70.1)	1,116 (2.8)	39,853 (100.0)
일터 등 기타	2,119 ( 9.3)	16,044 (70.4)	3,624 (15.9)	1,003 (4.4)	22,789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다는 응답을 더하면 거의 90% 내외로 나타났다. 고시원·고시텔에서 학업·취업 준비로 인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고시원·고시텔에서 대학생과 고시생이 많이 산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이든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 미만이라는 점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육아·간병·가사 등의 가정의 상황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알선 및 고용-복지 결합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보면 월평균 212.6만 원이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거처 형태는 숙박업소의 객실과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가구로서 월평균 소득은 130만 원대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높은 거처 형태는 기타로서 255.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거처 자체가 일터에 딸린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분포별로 보면 평균 소득수준이 낮았던 숙박업소의 객실 거주가구와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가구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인

〈표 2-9〉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

(단위: 만 원, 가구, %)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합계
합계	212.6	81,290 (22.0)	108,264 (29.3)	93,853 (25.4)	86,094 (23.3)	369,501 (100.0)
숙박업소의 객실	133.8	13,594 (44.7)	10,370 (34.1)	3,528 (11.6)	2,919 ( 9.6)	30,411 (100.0)
판잣집·비닐하우스	138.1	2,904 (44.0)	1,960 (29.7)	1,135 (17.2)	601 ( 9.1)	6,601 (100.0)
고시원·고시텔	180.5	38,798 (25.6)	46,375 (30.6)	43,193 (28.5)	23,188 (15.3)	151,553 (100.0)
일터 등 기타	255.5	26,055 (14.4)	49,576 (27.4)	45,777 (25.3)	59,528 (32.9)	180,936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경우가 44% 이상이었지만, 일자리와 관련해서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는 기타 거주자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58%가 넘었고, 17% 정도는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 평균 소득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고시원·고시텔 거주가구의 소득은 이에 훨씬 못 미쳤다.

### 3. 거처와 관련된 의견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얼마나 오래 현재 유형의 거처에서 지내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는 2017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조사되었는데, 당시 시점으로 3년 미만인 2015년 이후에 거주를 시작했다는 응답은 43.9%였고,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즉, 13년 이상 4년 이하)라는 응답이 35.6%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에 따라서 거주기간에 대한 응답은 매우 달랐다. 고시원·고시텔에서 지내는 경우는 70% 이상이 2015년 이후(3년 이내)라고 응답한 반면,

〈표 2-10〉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현 거처 거주 시작시기

(단위: 가구, %)

	1985년 이전	1985~ 1994년	1995~ 2004년	2005~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합계	12,563 ( 3.4)	16,997 ( 4.6)	46,188 (12.5)	131,542 (35.6)	162,211 (43.9)	369,501 (100.0)
숙박업소의 객실	395 ( 1.3)	852 ( 2.8)	3,923 (12.9)	13,077 (43.9)	12,164 (40.0)	30,411 (100.0)
판잣집·비닐하우스	1,221 (18.5)	1,406 (21.3)	1,564 (23.7)	2,033 (30.8)	376 ( 5.7)	6,601 (100.0)
고시원·고시텔	0 ( 0.0)	303 (0.2)	2,122 (1.4)	41,829 (27.6)	107,300 (70.8)	151,553 (100.0)
일터 등 기타	11,037 ( 6.1)	14,475 ( 8.0)	38,539 (21.3)	74,546 (41.2)	42,339 (23.4)	180,936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다른 거처 유형은 지낸 지 4년 이상 되었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다. 특히 판잣집·비닐하우스에서 지내는 경우는 94% 이상, 기타의 경우에도 75% 이상이 현 거처에서 지낸 지 4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주거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가 현재 사는 거처를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위치가 좋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응답이 6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주거비가 싸서 선택했다는 응답으로 46.7%가 그렇게 답하였다. 그 외에도 개인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이라는 응답 등이 뒤를 이었다.

거처 유형에 따른 현재 거처 선택이유를 보면 취업률이 높았던 일터 등 기타 거처나 고시원·고시텔에서 사는 경우는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 이상이었고, 다음은 주거비가 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대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판잣집·비닐하우스나 숙박업소의 객실이 거처인 경우에는 주거비가 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표 2-11〉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현재 거처 선택이유(복수응답)

(단위: %)

	저렴한 주거비	통근· 통학에 좋은 위치	생활 서비스 제공	개인 공간 확보	예전 부터 거주	가족 등 거주	기타
합계	46.7	67.8	5.0	23.1	12.7	8.5	1.6
숙박업소의 객실	64.7	46.5	6.1	43.0	11.9	4.2	1.7
판잣집·비닐하우스	74.0	28.5	1.0	16.5	28.5	16.8	1.6
고시원·고시텔	43.0	74.2	8.0	23.4	2.9	4.3	1.4
일터 등 기타	45.9	67.5	2.4	19.9	20.4	12.4	1.7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두 번째로 높았다. 다만 판잣집·비닐하우스가 거처인 경우는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8.5%에 이르고, 숙박업소의 객실이 거처인 경우는 개인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3%에 이르고 있었다.

다음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시설로서 이를 지적한 사람이 각각 40% 이상이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외로움·고립감으로 28%, 주거비 부담은 27% 정도로 나타났다.

거처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잣집·비닐하우스에 거처하는 경우와 일터 등 기타 처소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열악한 시설과 열악한 주변환경을 어려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높았고,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응답은 1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고시원·고시텔이 거처인 경우는 주거비 부담이 어렵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다. 숙박업소의 객실인 경우는 열악한 시설이 어렵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고, 외로움·고립감을 겪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이 41%로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럼 현재의 거처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현재의 거처에서 계속 지내겠다는 응답이 73%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를 거처 유형별로 보면 판잣집·비닐하우스가 거처인 경우와 일터 등 기타 거처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80% 이상이 현재의 거처에서 계속 거주

〈표 2-12〉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가 현재 거처에서 겪는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주거비 부담	외로움·고립감	열악한 시설	사생활 침해	열악한 주변 환경	기타
합계	26.5	27.8	40.6	12.4	42.3	3.8
숙박업소의 객실	36.2	41.5	46.6	8.9	40.7	0.9
판잣집·비닐하우스	9.5	21.5	72.4	4.6	58.9	9.4
고시원·고시텔	44.6	29.2	30.0	12.5	23.4	4.4
일터 등 기타	10.3	24.6	47.3	13.2	57.8	3.3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표 2-13〉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현재 거처에서 계속 거주 의사 여부

(단위: 가구, %)

	예	아니요	합계
합계	270,844 (73.3)	98,657 (26.7)	369,501 (100.0)
숙박업소의 객실	20,679 (68.0)	9,732 (32.0)	30,411 (100.0)
판잣집·비닐하우스	5,393 (81.7)	1,208 (18.3)	6,601 (100.0)
고시원·고시텔	99,722 (65.8)	51,831 (34.2)	151,553 (100.0)
일터 등 기타	145,111 (80.2)	35,825 (19.8)	180,936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고시원·고시텔이 거처인 경우와 숙박업소의 객실이 거처인 경우 현재의 거처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는 6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다음은 현재의 거처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현재 거처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많았고, 주거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4%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외에도 건강상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10.7%, 이웃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주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현재 거처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유는 거처 유형에 따라서 달랐다.

〈표 2-14〉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가 현재 거처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유

(단위: 가구, %)

	저렴한 주거비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	건강상 이주불가	이웃과의 관계 유지	기타	합계
합계	63,407 (23.4)	146,866 (54.2)	28,994 (10.7)	20,865 ( 7.7)	10,839 (4.0)	270,970 (100.0)
숙박업소의 객실	7,565 (36.6)	5,519 (26.7)	6,242 (30.2)	1,116 ( 5.4)	227 (1.1)	20,669 (100.0)
판잣집·비닐하우스	2,299 (42.6)	874 (16.2)	1,630 (30.2)	507 ( 9.4)	86 (1.6)	5,396 (100.0)
고시원·고시텔	24,029 (24.1)	65,606 (65.8)	2,692 ( 2.7)	1,296 ( 1.3)	6,082 (6.1)	99,705 (100.0)
일터 등 기타	29,476 (20.3)	74,923 (51.6)	18,440 (12.7)	18,005 (12.4)	4,356 (3.0)	145,200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생활하거나 판잣집·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주거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건강상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고시원·고시텔에서 생활하거나 일터 등 기타 처소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일전에 종로의 고시원 화재 이후 외곽의 주거시설로 이주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살던 곳 근처의 다른 고시원으로 이주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이중 눈에 띄는 응답은 건강상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약 30%가 이렇게 응답하였다. 이는 숙박업소의 객실과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가구주의 연령이 가장 높았다는 점과 연관될 것으로 여겨진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의사를 알아보았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1.3%로서, 앞에서 현재 거처에서 옮겨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3.4%인 것에 비해서 높았다. 거처 유형별로 보면 고시원·고시텔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서 61%였고, 일터 등 기타 시설 거주자가 가장 낮아서 25%였다. 이러한

〈표 2-15〉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유주택 거주 의사  
(단위: 가구, %)

	가구 수	공공임대주택		공유주택	
		의향 있다	의향 없다	의향 있다	의향 없다
합계	369,501	152,604 (41.3)	216,897 (58.7)	28,452 ( 7.7)	341,049 (92.3)
숙박업소의 객실	30,411	13,138 (43.2)	17,273 (56.8)	2,950 ( 9.7)	27,461 (90.3)
판잣집·비닐하우스	6,601	2,066 (31.3)	4,535 (68.7)	231 ( 3.5)	6,370 (96.5)
고시원·고시텔	151,553	91,993 (60.7)	59,560 (39.3)	19,702 (13.0)	131,851 (87.0)
일터 등 기타	180,936	45,415 (25.1)	135,521 (74.9)	5,609 ( 3.1)	175,327 (96.9)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결과는 다른 경우라면 현재 거처에서 이주의향이 없지만, 공동임대주택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이주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거처에서 이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라는 지역적 이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임대주택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지선택을 잘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공유주택에 대한 거주의향을 살펴보았다. 공유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하여 90% 이상이 공유주택에 대한 거주 의향이 없었다. 거처 유형별로 공유주택 거주 의향을 보면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 의향이 가장 높아서 13%대였고, 거주 의향이 가장 낮은 거처 유형은 일터 등 기타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 및 판잣집·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가구로서 거주 의향은 3%대로 나타났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가구의 기초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보면 6.5% 정도가 수급하고 있었다. 거처 유형별로 볼 때 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27% 정도가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을 받고 있었으며, 다음은 판잣집·비닐하우스에서 사는

〈표 2-16〉 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 중 기초보장제도 수급여부

(단위: 가구, %)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합계
합계	24,018 ( 6.5)	345,483 (93.5)	369,501 (100.0)
숙박업소의 객실	8,181 (26.9)	22,230 (73.1)	30,411 (100.0)
판잣집·비닐하우스	1,234 (18.7)	5,367 (81.3)	6,601 (100.0)
고시원·고시텔	7,275 ( 4.8)	144,278 (95.2)	151,553 (100.0)
일터 등 기타	7,237 ( 4.0)	173,699 (96.0)	180,936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경우로서 19%가 수급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이들 두 유형의 거처에서 사는 경우 고령자가 많았고, 건강상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 연관될 것으로 여겨진다. 고시원·고시텔의 경우 수급자 비율은 5% 미만이었었는데, 이는 고시원·고시텔에서는 대학생 및 고시 준비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매달 상당액의 집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노동소득이나 이전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기 때문이기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보조 57.5%, 일자리 지원 54.1%, 의료지원 27.5%, 교육지원 8.1%, 채무·과산면책 등 지원 7.4%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거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득보조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은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가구에서 80% 이상, 숙박업소의 객실 거주가구에서 70% 이상 선택하였다.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고시원·고시텔에서 생활하는 가구에서 67%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판잣집·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가구에서 52% 이상 선택하였다. 교육지원은 일터 등 기타 처소에서 생활하는 경우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아서 14%가량 되었고, 채무·과산면책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가장 선택이 높아서 14%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처를 쪽방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쪽방은 주로 1인이 거주하는 좁은

〈표 2-17〉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복수응답)  
(단위: %)

	가구 수	소득 보조	일자리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채무·파산 면책 등 지원
합계	369,501	57.5	54.1	27.5	8.1	7.4
숙박업소의 객실	30,411	71.6	56.0	30.5	7.1	13.6
판잣집·비닐하우스	6,601	80.1	29.2	52.0	5.4	3.9
고시원·고시텔	151,553	55.1	67.2	13.8	1.6	6.2
일터 등 기타	180,936	56.3	43.8	37.7	13.9	7.6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표 2-18〉 주택 이외 거처 거주가구 중 현 거처를 쪽방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단위: 가구, %)

	쪽방으로 인식	쪽방으로 인식하지 않음	합계
합계	74,270 (20.1)	295,231 (79.9)	369,501 (100.0)
숙박업소의 객실	8,393 (27.6)	22,018 (72.4)	30,411 (100.0)
판잣집·비닐하우스	1,221 (18.5)	5,380 (81.5)	6,601 (100.0)
고시원·고시텔	40,313 (26.6)	111,240 (73.4)	151,553 (100.0)
일터 등 기타	24,245 (13.4)	156,691 (86.6)	180,936 (100.0)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방으로, 독립된 부엌이나 화장실이 없는 구조로 형태는 판잣집,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지역마다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sup>

현 거처를 쪽방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약 7만 4천여 가구로서 20% 정도로 나타났다. 거처 유형별로 살펴보면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사는 경우와 고시원·고시텔에서 사는 경우 쪽방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26% 이상으로 높았으며, 일터 등 기타 처소에서 기거하는 경우 쪽방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13%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3) 동 지침서에서는 “쪽방은 법적으로 정의된 거처의 유형은 아니며 실제 주택유형이 일반주택, 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업소, 고시원의 형태일 수 있다. 쪽방상담소의 지원을 받거나 거주자가 쪽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쪽방으로 조사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 제2절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

### 1. 쪽방의 개념과 현황

쪽방이란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누어서 한두 사람이 들어갈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 부엌이나 화장실·세면 공간 등이 없는 최저기준 미만의 협소한 주거공간이다. 그리고 이 같은 쪽방이 모여서 만들어진 마을을 ‘쪽방촌’이라 부른다. 쪽방과 쪽방촌은 한국에서 본격적인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쪽방이라는 거처가 정책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 응급구호사업이 시작된 즈음이라고 한다. 당시 쪽방에서 살던 사람 중 다수가 실직상태에서 거리노숙으로 내몰린 것이 발견되었고, 정부는 쪽방 주민을 잠재적인 노숙인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쪽방에 대한 개념규정이 시도되었다. 쪽방상담소 협의회에서는 쪽방이란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보증금 없이 일세·월세·사글세를 지불하는 부대시설(세면, 취사, 화장실 등)이 없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신·가족, 취약·주거불안 계층이 거주하며 수급권자나 비정기적인 일자리와 건설일용직과 같은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저렴한 주거공간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쪽방을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임대차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쪽방이라 불리는 거처의 건물은 통상 일반주택, 여관, 여인숙, 고시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일반주택을 개조한 차고, 버려진 축사, 공장 의 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이다. 쪽방으로 불리는 거처의 대부분은 무보증의 월세, 사글세 혹은 일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세는 거리 노숙에서 잠시라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 형태이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2006년 노숙인 쉼터 입소자를 중심으로 시행

되었던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2007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에서 시작되었다(한국도시연구소, 2017). 처음에는 사업 대상을 노숙인 복지시설(쉼터) 거주자와 쪽방 거주자로 나누어 운영하였지만, 2010년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으로 변경하면서, 주거지원 대상을 쪽방과 쉼터 거주자 이외에도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 등으로 확대하고,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사업도 통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 2.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처리 방식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주거기본법」 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2018.10.24)」, 「노숙인등의 복지법」 제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sup>4)</sup>

### 가. 주요 사업 내용

주거지원사업은 주거지원사업,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건설·매입 임대사업, 전세임대사업 등으로 나뉜다. 주거지원사업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사업 등을 말하는 것이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및 주거상향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설·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을 말한다. 건설·매입임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건설 및 매입 등을 통하여 확보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

4) 이후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온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 지침」을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세임대사업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나. 지원대상

첫째, 사업시행자<sup>5)</sup>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 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 피해자에 한한다.

1.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sup>6)</sup> 컨테이너·옴막 등, PC방·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sup>7)</sup> 거주하는 사람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3. 최저주거기준<sup>8)</sup>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둘째, 무주택세대<sup>9)</sup>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sup>10)</sup>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첫째 및 둘째 조건을 만족하였다 할지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sup>11)</sup>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

5) 여기에서 ‘사업시행자’란 한국도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7)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8)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9)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4호.

10)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1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넷째, 소득 산정 및 자산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sup>12)</sup>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과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공급주택의 유형

공급주택은 일반가구 임대용 주택과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으로 나뉜다. 일반가구 임대용 주택이란 시행자가 입주대상자에게 직접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1인 가구용 및 다인 가구용으로 세분한다. 운영기관 임대용 주택이란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관<sup>13)</sup>에게 임대하는 주택<sup>14)</sup>으로서 1인 가구용 및 다인 가구용으로 세분한다.

#### 라. 입주신청

입주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기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입주신청서를 접수받은 운영기관 또는 주민센터장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가족, 주거, 건강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주자 현황조사(면접조사 포함) 후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에 대하여 「입주자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등에 제출한다. 이 경우, 주민센터장은 현황조사 시행 시 운영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3) 운영기관이란 주거취약계층의 입주신청 접수·현황조사, 입주 후 생활관리 등 입주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4) 제59회 국정과제회의 시 확정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서 단신계층용 시범 사업으로 공급한 주택을 포함한다.

<입주신청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자활의지가 있어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임대주택 보증금등 초기정착 비용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자
-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2항에 따른 입주자 현황조사 및 별지3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작성에 있어서 소득과 자산의 확인은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한다.

마. 입주대상자의 선정

시장 등은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4 입주자 선정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 둘째, 여인숙 등의 거주자 중 가구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 순숙박업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셋째, 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시험준비생 등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넷째, 기타 시장 등이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평가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은 별도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시 입주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자활실적·가구원 수·소득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임대보증금 감면대상자를 추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단신계층용 임대주택<sup>15)</sup>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

15) 제59회 국정과제회의(2005. 4. 27) 시 확정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으로 시범 공급되어 임대 중임.

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대상자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입주대상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의 유형을 결정하고, 입주대상자 또는 운영기관과의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지원 및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격을 조회하여야 한다.

#### 바. 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관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급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여야 하며, 그 밖의 임대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계약 체결 전까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이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계약시에도 또한 같다.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 사.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급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입주자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전세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 ⑤ 입주자가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 ⑥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⑦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⑧ 운영기관이 입주대상자 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택을 이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경우
- ⑨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⑩ 그 밖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해당 공급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급주택의 명도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 아. 기존 임차인에 대한 특례

공급주택의 매입 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이를 입주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조건은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자.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사업시행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시 보건복지부 장관·고용노동부 장

관 및 관할 시장 등에게 입주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고용촉진프로그램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 등은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시행 등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3.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sup>16)</sup>

서울시는 법에서 규정한 주거지원 이외에 희망원룸, 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 지원주택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원을 통해서 원룸이나 고시원의 임대료를 시중보다 낮게 홈리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주택은 SH에서 주택을 제공하고, 희망원룸과 쪽방은 건물을 한 시적으로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사용하고 있다. 지원주택은 알코올 중독 등을 가진 노숙인이 대상이고, 희망원룸은 자립준비가 된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은 쪽방 주민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업이다.

#### 가. 희망원룸

희망원룸은 2012년 12월 서울시와 구세군이 민관협력으로 설치한 염가 숙소이다. 서울시에서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구세군)에서 위탁운영하는 곳이다. 입주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활의지가 있는 거리 홈리스가 입주대상이다. 월 이용료는 8만 원인데, 이 중 5만 원은 적립하여 1년의 거주기간이 완료되면 퇴소 시 자립정착금 형태로 되돌려준다.

희망원룸은 기존 노숙인 시설과는 다른 별개의 주거 프로그램으로서 기존 고시원 건물을 5년간 임대,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인룸, 사무실, 공동샤워실, 세탁실, 공동휴게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시설당 7명의 운영인력<sup>17)</sup>이 운영하고 있다. 입주기간 동안 신용회복, 취업, 주거지

16) 위의 내용은 한국도시연구소(2017)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운영되는 곳은 2개소로 각 30명, 25명이 정원이고, 운영 후 성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다.

#### 나.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기존 쪽방 건물을 임차해 개보수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쪽방 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쪽방의 임대료가 거주자의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지만 주거환경은 열악해서 비수급 빈곤층, 거리노숙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보고 기존보다 개선된 주거환경을 더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 당시 서울시는 쪽방 임대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화장실과 주방을 공유하고 개별실을 보장하는 공유주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해마다 주요 쪽방 지역에 100개의 저렴 쪽방을 만들어서 쪽방 전체 임대료 가격 결정자의 역할을 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동자동 등 쪽방 밀집지역이다.

운영방식은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 자율방식으로 진행하여 쪽방상담소, 쪽방촌 자조조직 등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인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해서 공동체성 함양을 지원한다고 한다.

저렴 쪽방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건물은 서울시에서 보증금·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지원한 새꿈하우스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비용을 지원한 디딤돌하우스가 있다. 새꿈하우스는 4개소 111호, 디딤돌 하우스는 1개소 23호가 운영되어 총 134호의 저렴 쪽방이 운영되고 있다.

---

17) 행정책임자 1명, 상담원 3명, 생활지도사 3명, 시설장은 구세군에서 비상근으로 파견.

#### 다. 지원주택

2016년 말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제공한 것으로 집이 없거나 거처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독립적이며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되는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대상은 남성은 알코올 중독, 여성은 정신질환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증금은 200만~300만 원, 월 임대료는 10만~20만 원 사이이고, 전문 사례관리자가 배치되어 입주자에 대한 투약과 재활훈련을 수행한다.

현재 지원주택은 노숙인 복지시설인 2개의 재활시설 입소자의 퇴소 후 거처로 활용되거나 거리노숙 경험자로 국한되고, 쪽방주민은 지원주택의 입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4. 평가

현재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은 노숙인 복지시설의 제공 및 임시주거비 지원(복지부 및 지자체), 공공임대주택(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희망원룸·저렴쪽방 임대지원 사업·지원주택(서울시) 등이다.

이들 사업 중 쪽방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극히 드물다.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탈거리 노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거리 노숙인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쪽방상담소 중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쪽방에서 거처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임시주거비 지원을 받기란 어렵다. 또한 재활대상 홈리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주택은 거리 노숙인 이용시설이나 노숙인 복지시설을 경유한 사람이 주된 대상이 된다. 자활대상이든 재활대상이든 역시 거처기준으로서 쪽방 거주민에 대한 고려는 없다.

한편 쪽방 입주민의 실거주비 감소 및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성 함양을 목적으로 시작된 저렴 쪽방사업은 수급가구의 경우 주거급여의 실제 임차료 지급으로 인해서 실거주비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공급량 또한 해당 지역의 쪽방 수에 비해 매우 적어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료 결정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이다. 특히 쪽방 철거로 퇴거당하는 쪽방 주민이 저렴한 쪽방 입주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알코올·정신질환 등을 가진 홈리스에게 주택과 결합된 서비스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지원주택 역시 입주대상이 노숙인 복지시설 퇴소자이거나 거리노숙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쪽방 거주자는 입주 대상이 아니다.

그 외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거주자가 입주신청을 할 수 있지만, 거처상실에 대비하는 긴급지원책이 아니라 주거 상향이동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하나로서 수행되고 있으며,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최근 보증금을 낮추면서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 또한 쪽방주민이 선택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직접 입주 이외에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기관이 신규주택을 확보하지 않는 한 쪽방 거주민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쪽방 거주민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쪽방 등을 필요로 하거나 그 이상의 주택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주거복지정책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다시 말해 저렴한 주거에서 임대주택으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곳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최근 시작한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은 쪽방 자체를 주거자원으로 인정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임대기간과 시가 목표한 기대효과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감소로 인한 생활개선, 인근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쪽방의 철거나 폐쇄로 인한 주거상실을 포함해 다양한 사유로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거주민을 지원하는 주거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 제 3 장 주거취약 노동자의 건강 및 노동시장 특성

### 제1절 조사 개요

주거취약 노동자의 노동시장 특성과 건강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조사와 집중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지역의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이면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을 조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서울시 주거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강남, 강북, 강서, 관악, 성북, 구로, 광진, 금천, 노원, 동작, 마포, 서대문, 송파, 영등포, 은평, 종로 등 16개 주거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서울 전역의 쪽방 및 고시원 거주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에서 11월 말까지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은 총 97명이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 정부지원 관련사항, 주거 관련사항, 현재 하는 일, 직업력, 폭력 및 차별 경험, 건강 및 사회적 관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은 성별·연령, 학력 등 응답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과 가구원 수 및 가구특성, 소득원, 가구소득 등 가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지원 여부, 의료보장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주거관련 사항은 현재 사는 곳의 시설·설비, 거주기간, 임대료, 계약서, 전입신고, 지불방법, 이주의향 및 이

주 시 원하는 주거 형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주와 관련된 내용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하는 일과 소득관련 질문은 하는 일의 내용, 종사상 지위, 한 달 평균 일자리 개수, 월평균 일하는 날수, 근로소득, 구직경로, 일을 더 하고 싶은 지 여부, 출퇴근 비용 및 시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직업경력과 관련된 질문은 이전에 하던 일, 산재 및 실업경험, 직업전망 등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폭력 및 차별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 업무관련 괴롭힘, 연령·국적·성별·장애·출신지역·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여부를 질문하였다. 건강 및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질문은 건강상태, 질병여부, 우울증 진단척도, 생활습관, 대화 및 사회적 지원망, 식사 및 빛 여부, 소득적절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들이 현재 하는 일과 소득, 직업경력, 폭력 및 차별, 건강 등에 대한 질문은 근로환경조사의 설문과 상당부분 유사하다. 필요한 경우 같은 연령대 취업자의 근로환경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 소득 등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결과와 비교해볼 것이다.

〈표 3-1〉 설문의 구성과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일반적인 사항	성별, 연령, 학력, 가구원 수, 가구특성, 장애여부, 소득원, 가구소득	
정부지원 관련	정부지원 여부, 의료보장,	
주거관련	주소, 사는 곳, 시설 설비, 거주기간, 임대료, 계약서, 전입신고, 지불방법, 이주 시 원하는 형태	이주관련 심층면접
현재 하는 일과 소득	하는 일, 종사상 지위, 일자리 개수, 월평균 근로일수, 소득, 구직경로, 더 일할 의향, 출퇴근 비용 및 시간	
직업 경력	이전에 하던 일, 산재 경험, 실업 경험, 직업 전망	직업경력관련 심층면접
폭력 및 차별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희롱, 업무관련 괴롭힘, 연령차별, 국적차별, 성차별, 장애차별, 출신 지역 차별, 고용형태 차별	
건강 및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 질병여부, 결근일수, 우울증 진단척도, 생활습관, 대화 및 사회적 지원망, 식사, 빛 여부, 소득적절성에 대한 인식	

##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상황

## 1. 인구학적 특성과 주거공간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86% 이상이었고, 평균 연령은 52.0세로 중장년층이었다.

응답자 중 40대 미만은 7.2%였고, 40대가 29.9%, 50대가 42.3%, 60대 이상이 20.6%였다. 이렇게 40대 미만이 적은 이유는 고시원에 사는 학생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 40대 이상 위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시원과 쪽방에서 생활하는 취업자 자체가 중장년층이 많기도 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력은 고졸이 3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졸 20.8%, 4년제 대졸 이상 17.7%, 국졸 12.5%, 전문대졸 9.4%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2〉 설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인원	비중
성별	남성	84	86.6
	여성	13	13.4
연령	평균연령	52.0세	
	40대 미만	7	7.2
	40대	29	29.9
	50대	41	42.3
	60대 이상	20	20.6
학력	초졸 이하	12	12.5
	중졸	20	20.8
	고졸	38	39.6
	전문대학졸	9	9.4
	4년제 대졸 이상	17	17.7

〈표 3-3〉 제5차 근로환경조사 중 40대 이상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비중
성별	남성	57.9
	여성	42.1
연령	40대	31.6
	50대	35.6
	60대 이상	32.8
학력	초졸 이하	8.3
	중졸	10.0
	고졸	41.1
	대졸	40.6
	무응답, 거절	0.1

자료: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분석.

이를 근로환경조사에 응답한 40대 이상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환경조사에서 40대 이상 취업자는 남성의 비중이 58% 정도이지만, 고시원·쪽방 거주 취업자로서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남성이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여성이 단신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력을 보면 근로환경조사의 취업자는 고졸 미만의 비중이 18% 정도인데, 고시원·쪽방 거주 취업자는 33%로 높았고, 대졸 이상자의 비중은 근로환경조사에서 41%인 것에 비해서 고시원·쪽방 거주 취업자는 27% 정도로 낮았다.

이를 보면 고시원·쪽방촌 등에서 거주하는 취업자는 주로 중고령의 남성이고, 학력 수준은 일반적인 취업자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사는 주거공간은 쪽방이 20.8%, 고시원이 64.6%, 기타가 14.6%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쉼터 등 정부가 마련한 임시주거공간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여관 및 여인숙, 점포, 지인 집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시원·쪽방촌 거주 취업자의 기초보장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수급, 조건부 수급, 특례수급 등 어떤 형태로든지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인

〈표 3-4〉 설문 응답자의 주거공간 및 가구특성

(단위: 명, %)

		인원	비중
주거 공간	쪽방	20	20.8
	고시원	62	64.6
	기타	14	14.6
기초보장 수급 여부	일반수급	7	7.5
	조건부수급	22	23.7
	특례수급	2	2.2
	비수급	62	66.7
장애 여부	장애등록	6	6.3
	비장애인	89	93.7
가구원 수	1명	87	92.6
	1명 초과	7	7.4
의료 보장	의료급여 1종	11	12.0
	의료급여 2종	19	20.7
	지역건강보험	33	35.9
	직장건강보험	16	17.4
	건강보험 체납	13	14.1

사람이 전체의 33.3%였으며, 나머지 66.7%는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급률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한 저소득 가구<sup>18)</sup>의 기초보장제도 수급률 26.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장애 여부를 보면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6.3%로서, 한국복지패널 저소득층 조사에서 나타난 23.0%보다 매우 낮았다. 가구원 수는 92%가 1인 가구라고 응답했는데, 이 결과는 한국복지패널 조사 중 저소득층 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비중 53%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다.

의료보장을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가 32.7%이고, 나머지는 지역건강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의 대상이었는데 직장건강보험의 대상인 경우는 17% 남짓 되었다.

18) 한국복지패널에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구를 저소득가구라고 칭하고 별도의 분석을 하고 있다.

〈표 3-5〉 한국복지패널 저소득가구의 가구 특성

(단위: %)

		비중
생계 급여	일반수급	24.14
	조건부수급	1.92
	특례수급	0.00
	비수급	73.9
주거 급여	임차급여(특례 포함)	27.1
	수선유지급여(특례 포함)	2.5
	비수급	72.9
장애 여부	장애등록	23.0
	비장애인	77.0
가구원 수	1명	53.0
	1명 초과	47.0

자료: 국가통계포털.

## 2. 경제적 상태

응답자 가구의 총소득을 살펴보았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정부보조, 가족친지의 이전소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 75.3%는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되었지만 나머지는 정부보조나 가족친지의 보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24.7%였는데, 가족친지로부터 이전소득이 있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3개 사례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보조를 받고 있었다.

조사된 총소득은 월평균 105만 6천 원이었다. 총소득의 분포를 보면 80만 원 미만인 사람이 38.1%, 8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인 사람이 38.1%이고, 단지 23.7%만이 150만 원 이상이었다.

근로환경조사에서 40대 이상 취업자의 일자리 소득이 295만 5천 원인 것에 비하면 이들의 가구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한국복지패널의 저소득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93만 2천 원에 더 가까운 수치이다.<sup>19)</sup>

19)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취업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

〈표 3-6〉 가구 소득의 구성과 수준

(단위: 명, %)

		응답 수	비중
전체 가구 소득수준	80만 원 미만	37	38.1
	8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37	38.1
	150만 원 이상	23	23.7
	월 평균	105만 6천원	
소득의 구성	근로소득	73	75.3
	근로소득+정부보조	9	9.3
	근로소득+가족친지	1	1.0
	근로소득+정부보조+가족친지	1	1.0
	정부보조	12	12.4
	가족친지	1	1.0

장애가 있거나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일 경우 정부로부터 소득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장애여부에 따라서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여부를 살펴보았다. 장애가 있을 경우 정부의 소득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확실히 더 높았지만, 등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정부로부터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50%에 이르렀다. 기초보장 수급여부와 정부 소득지원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일반수급자의 경우 소득지원을 받는 경우가 70% 이상이었지만,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는 정부의 소득지원을 받는 경우는 36%로 낮아졌으며 비수급자가 정부의 소득지원을 받는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빛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빛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6%로서 약 2/3 정도가 빛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 달 소득으로 수입지출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정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은 6점 척도로 하도록 했다. 쉽다는 응답은 17% 정도였고, 어렵다는 응답은 83% 정도로 나타나서 어렵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근로환경조사에서 40대 이상 취업자의 응답을 보면 쉽다는 응답이 57% 정도였고, 어렵다는 응답은 43% 정도로 대조적이었다.

가구 중 저소득가구의 가구소득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7〉 장애 및 기초보장 수급여부와 정부 소득보조 여부

		정부보조 없음	정부보조 있음	계
장애 여부	장애 있음	3	3	6
		50.0	50.0	100.0
	장애 없음	70	19	89
		69.4	30.6	100.0
	계	73	22	95
		76.8	23.2	100.0
기초보장 수급 여부	일반수급	2	5	7
		28.6	71.4	100.0
	조건부 수급	14	8	22
		63.6	36.4	100.0
	특례	2	0	2
		100.0	0.0	100.0
	비수급	57	9	66
		86.4	13.6	100.0
	계	75	22	97
		77.3	22.7	100.0

〈표 3-8〉 빛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설문조사		한국복지패널 (저소득가구)
	응답 수	비중	비중
있다	63	65.6	44.6
없다	33	34.4	55.5
계	96	100.0	100.1

자료: 설문조사 원자료, 국가통계포털.

〈표 3-9〉 수입과 균형을 맞추는 일의 난이도

(단위: 명, %)

	설문조사 결과		근로환경조사 (40대 이상)
	응답자	비중	비중
매우 쉽다	3	3.1	2.8
대체로 쉽다	10	10.4	23.5
약간 쉽다	3	3.1	30.9
약간 어렵다	24	25.0	30.7
대체로 어렵다	28	29.2	9.8
매우 어렵다	28	29.2	2.2
무응답, 거부			0.2
계	96	100.0	

자료: 설문조사 원자료,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 제3절 근로실태

### 1. 근로실태

#### 가.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지난 한 달 동안 일을 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명이, 조사인원 97명 중 11.3%는 그간은 일을 해왔지만 지난달에는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86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노동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난 한 달(30일 기준) 동안 몇 일이나 일했는가를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16.6일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일 미만 일했다는 응답이 23.3%이고, 20일 이상 일했다는 응답은 57%로서, 10일 미만 일한 불완전 취업

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을 질문한 결과 8시간 미만 일했다는 응답이 36.1%, 8시간 일했다는 응답이 36.1%, 8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는 응답이 27.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환경조사에서 한 달 중 일한 날수가 20일 48.3%, 20일 초과 43.9%이고, 평균 23.4일인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일한 시간을 일주일 평균으로 표준화하기 위하여 한 달(30일 기준) 중 일한 날수와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을 곱하여 한 달 동안의 근로시간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4.3으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주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25.9%, 일은 하지만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이 52.9%,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21.2%에 불과하였다.

〈표 3-10〉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명, %)

		설문조사 결과		근로환경조사 (40세 이상)
		인원	비중	비중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22	25.9	4.3
	40시간 미만	45	52.9	8.1
	40시간 이상	18	21.2	87.6
	평균	29.6		41.4
한 달 중 일한 날수	10일 미만	20	23.3	0.9
	10~20일 미만	17	19.8	6.9
	20일	22	25.6	48.3
	20일 초과	27	31.4	43.9
	평균	16.6일		23.4일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8시간 미만	31	36.1	
	8시간	31	36.1	
	8시간 초과	24	27.9	
	평균	7.8		

자료: 설문조사 원자료,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이러한 결과는 근로환경조사에서 40세 이상 취업자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41.4시간이고, 주 40시간 미만 일한 사람의 비중이 12.4%에 불과한 것과 대조된다.

이렇게 일하는 날짜가 불규칙하고 일하는 시간이 짧은 것은 할 일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일을 더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현재 일하지 않거나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람 73명을 대상으로 할 일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일하고 싶은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79.5%는 더 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나머지 20.5%는 더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우선 일을 더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15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압도적 다수인 13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일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다른 이유를 말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더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58명에게도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는 자활근로 중인데 내년에 자활근로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응답,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더 해보겠다는 응답 등이 눈에 띄었다.

이들에게 1달에 며칠이나 밤 근무를 했는지를 물었다. 밤 근무는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중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과는 초소 2시간 일하는 것을 한 횟수를 질문하였다. 전체의 25.6%가 밤 근무를 했다고 응답했고, 밤 근무를 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0% 가까이 15일 이상 밤 근무를 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직업을 살펴보니 경비, 시설관리, 청소,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택시기사 등 밤 근무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근로환경조사에서 40대 이상 취업자의 밤 근무여부를 살펴본 결과 밤 근무를 한다는 응답은 10%로 훨씬 적게 나타났다. 밤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한 달 중 밤 근무일수는 15일 미만이 62%로 고시원·쪽방 거주 취업자에 비해서 다소 적게 나타났다.

〈표 3-11〉 밤 근무 여부 및 횟수

(단위: 명, %)

	설문조사 결과		근로환경조사 (40대 이상)
	인원	비중	비중
밤 근무 없음	64	74.4	90.0
밤 근무 있음	22	25.6	10.0
15일 미만	9	(41.0%)	(61.9%)
15일 이상	13	(59.0%)	(38.1%)
평균	16.6일		12.2일

자료: 설문조사 원자료,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 나. 근로소득

다음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주거취약 중고령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105만 5천 원이다. 근로소득의 분포를 보면 월 80만 원 미만인 비율이 37.2%이고, 8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자의 비율이 37.2%이고,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25.6%에 불과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일하는 시간의 양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일한 양을 반영했을 때에는 받는 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의 한 달 근로소득을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근로소득을 구해보았다.<sup>20)</sup> 시간당 근로소득을 구해본 결과 시간당 평균 시급은 9,721원이고, 근로소득자 중 36.1%는 최저시급 미만의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급이 13,000원을 넘는 경우는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일자리의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나, 모든 일자리에서 최저시급 미만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20) 야간에 일하는 경우 할증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질문하지 못해서 할증을 고려하지는 못했다.

〈표 3-12〉 근로소득의 구성과 수준

(단위: 명, %)

		응답 수	비중
근로소득	80만 원 미만	32	37.2
	8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32	37.2
	150만 원 이상	22	25.6
	월평균	106만 5천원	
시간당 소득	최저임금(8,350원) 미만	31	36.1
	최저임금 이상~13,000원 이하	41	47.7
	13,000원 초과	14	16.3
	시간당 평균	9,721 원	

## 2. 주로 하는 일자리의 특성

### 가. 일자리의 종류와 종사상 지위

지난달 일을 했다고 응답한 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몇 개의 일자리에  
서 일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84.9%가 1개 일자리에서 일했다고 응답하였  
고, 나머지 15.1%는 2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일했다고 응답하였다.

주평균 근로시간과 일자리 개수를 살펴보았다. 주평균 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경우는 일자리 개수가 2개 이상인 비율이 22.7%였고,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는 11.1%, 40시간 이상인 경우는 15.8%였지만  
이를 갖고 어떤 경향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사람들은 한 가지 일자리에서의 일 지속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다  
른 일을 더 하게 되면 일자리 개수가 증가하게 된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평균 근로시간이 긴 사람들은 여러 일자리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3〉 주평균 근로시간과 일자리 갯수

	일자리 1개	일자리 2개 이상	계
주 15시간 미만	17	5	22
	77.3	22.7	100.0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40	5	45
	88.9	11.1	100.0
주 40시간 이상	16	3	19
	84.2	15.8	100.0
계	73	13	86
	84.9	15.1	100.0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응답은 2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실업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간 가장 많이 한 일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내용을 보면 건설일용직이 2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비/청소/관리 등이 17.1%, 운전/배달/퀵서비스/대리기사 등이 17.1%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식당일이나 돌봄 노동, 단순조립 생산직 등을 한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자활근로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33% 정도가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특별자활 대상자였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현재 주로 하는 일의 종사상 지위를 질문하였다. 종사상 지위에 대한 질문은 정부 일자리를 제외한 시장에서의 일자리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일용근로자인 비중이 54.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상용근로자 26.3%이고, 비임금근로자인 경우가 19.2%로 나타났다. 근로환경조사에서 40대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51%이고, 임시·일용근로자 14%, 비임금근로자 35%로 차이가 있었다.

〈표 3-14〉 현재 주로 하는 일(중복응답)

(단위: 명, %)

하는 일	응답 수	비중
건설 일용직	23	21.9
경비/청소/관리	19	18.1
운전/배달/퀵/대리기사	18	17.1
자활근로/공공근로	11	10.5
미싱/단순조립/생산직	10	9.5
식당 일(설거지, 흙써빙)	7	6.7
돌봄노동	3	2.9
기타	14	13.3
계	105	100.0

〈표 3-15〉 현재 주로 하는 일의 종사상 지위(중복응답, 정부 일자리 제외)

(단위: 명, %)

		설문조사		근로환경조사 (40세 이상)
		응답 수	비중	비중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26	26.3	51.0
	임시·일용근로자	54	54.5	14.1
비임금근로자	가족종사자/자영업자	19	19.2	34.9
계		99	100.0	100.0

자료: 설문조사 원자료,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다음은 일자리가 특고, 용역/파견, 비공식 부문 등 소위 불안정한 (precariat) 일자리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때에도 정부 일자리는 제외하였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61.1%에 이르렀고, 이에 해당되지 않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38.9%였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용역/파견 일자리라는 응답이 44.4%, 비공식부문의 일자리라는 응답이 14.4%이고, 특고에 해당된다는 응답은 2.2%였다.

〈표 3-16〉 현재 주로 하는 일의 비정형성(중복응답)

(단위: 명, %)

	응답 수	비중
용역/과건	40	44.4
비공식 부문	13	14.4
특고	2	2.2
해당 없음/모름	35	38.9
계	90	100.0

주: 해당 없음/모름이라 응답한 일자리 중에는 자활 일자리 11개(10.9%)가 포함됨.

〈표 3-17〉 일자리의 보수 계산방식과 지급주기, 지급방식(복수응답)

(단위: 개, %)

		일자리 수	비중
보수 계산 방식	시간급	22	22.4
	일급	47	48.0
	월급	29	29.6
보수 지급 주기	매일	40	36.7
	1주일	11	10.1
	1개월	51	46.8
	기타	7	6.4
보수 지급 방법	통장	59	57.3
	현금	41	39.8
	현물	2	1.9
	통장 + 현금	1	1.0

다음은 일자리에서 보수를 받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보수 계산 방식은 일급이 48.0%로 가장 많았고, 월급은 29.6%였으며, 시간급은 22.4%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급으로 보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이유는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일자리가 가장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수의 지급주기는 1개월 단위로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고,

〈표 3-18〉 출퇴근 실태

(단위: 개, %)

		일자리 수	비중
왕복 걸리는 시간 (n=65)	30분 이하	17	26.2
	30분 초과~1시간 이하	26	40.0
	1시간 초과~1시간 30분 이하	9	13.8
	1시간 30분 초과	13	20.0
	평균	1시간 6분	
소요되는 비용* (n=68)	3천 원 이하	39	57.4
	3천 원 초과 5천 원 이하	26	38.2
	5천 원 초과	3	4.4
	평균	3140.8원	

주:\* 대리운전 하는 사람 한 명이 하루 평균 8만 원이 든다고 응답한 것은 이상치로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매일 지급한다는 응답이 36.7%, 1주일 단위라는 응답이 10.1%였다. 보수 지급방법을 보면 통장이 57.3%로 가장 높지만 현금으로 준다는 응답 또한 40% 정도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상태이거나 자활일자리 등을 하고 있어서, 다른 일자리는 공식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때문인 경우가 일부 있었고, 일부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음은 일자리까지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살펴보았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6분이었고, 1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전체의 66.2%를 차지해서 편도로 30분 이내의 거리를 출퇴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평균이 3,140원 정도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 번만 타는 정도 이상의 요금을 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적은 이유는 이들은 대체로 멀리 간다고 해서 시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통비가 덜 드는 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버는 돈이 소액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아끼기 위한 것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일과 관련한 폭력, 차별 경험

다음은 일을 하면서 폭력이나 차별을 경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폭력에 대해서는 언어폭력, 업무관련 괴롭힘, 신체적 폭력 또는 위협을 질문하였고, 차별과 관련해서는 연령차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질문하였다.

가장 많이 당했다고 응답한 것은 언어폭력으로 응답자 중 34.7%가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연령차별로서 응답자의 24.2%가 연령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업무관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20% 이상이었다.

〈표 3-19〉 폭력 및 차별 경험여부

(단위:%)

	당한 사람 비중
언어폭력	34.7
연령차별	24.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21.1
업무관련 괴롭힘	20.0
신체적 폭력 또는 위협	11.6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8.4

## 제4절 건강 및 질병 여부

### 1.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질병여부

다음은 건강 및 질병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선생님의 현재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인 응답을 한 비중은 41.4%였고, 보통이 25.6%, 부정적(‘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인 응답이 33.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근로환경조사의 40세 이상 취업자의 응답과는 크게 다르다. 근로환경조사의 응답을 보면 긍정적인 응답(매우 좋다+좋은 편이다)이 66%이고, 부정적인 응답(나쁜 편이다+매우 나쁘다)은 4.3%에 불과하였다. 즉, 일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고시원·쪽방 거주 취업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데도 힘겹게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1/3 정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0〉 전반적인 건강상태

(단위: 명, %)

	설문조사 결과		근로환경조사 (40대 이상)
	응답 수	비중	비중
매우 좋다	11	12.0	7.4
좋은 편이다	27	29.4	58.5
보통이다	23	25.0	29.8
나쁜 편이다	29	31.5	4.0
매우 나쁘다	2	2.2	0.3
계	92	100.0	100.0

〈표 3-21〉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른 한 달 근로시간

(단위: 시간)

건강상태	근로시간
매우 좋다	192.6
좋은 편이다	149.4
보통이다	109.1
나쁜 편이다	106.7
매우 나쁘다	67.5
근로시간 평균	128.8

자료: 설문조사 원자료,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전반적인 건강상태의 인식에 따른 한 달 근로시간을 구해보면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주당 4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더 하고 싶은가를 질문한 결과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다음은 의사의 확진을 받은 질병이 있는지 여부와 그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질병은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근골격계 질환, 손상, 불면증 등 성인 만성질환으로 알려진 질병과 일하다 다칠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하였다.

가장 많이 진단을 받은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응답자의 34.1%가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중 53.3%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고혈압으로서 진단받은 비율은 30.8%였지만 이 중 절반 미만만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불면증의 경우에도 진단받은 비율이 30.6%이고, 이 중 26.9%만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진단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이 50% 이상인 질환은 손상, 근골격계 질환, 당뇨병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비율은 11.2%이고 이 중 50%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경우 대표적인 성인 만성질환으로 복약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치료를 받는 사람의 비중이 많아야 50%를

〈표 3-22〉 의사의 진단을 받는 질병과 치료경험

(단위: %)

질병명	진단받은 비율	치료경험 비율
고혈압	30.8	46.4
당뇨병	11.2	50.0
우울증	23.9	47.6
근골격계 질환	34.1	53.3
손상	17.1	53.3
불면증	30.6	26.9
건강상의 문제 있음	65.5	65.5

〈표 3-23〉 건강문제로 결근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인원	비중
없음	57	62.6
있음	34	37.4
5일 이하	(16)	(47.1%)
5일 초과 15일 이하	( 8)	(23.5%)
15일 초과 30일 이하	( 6)	(17.6%)
30일 초과	( 4)	(11.8%)

넘지 못한다는 점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는 응답이 23.9%이고, 이 중 47.6%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2.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과 absentism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건강문제로 결근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62.6%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고, 나머지 37.4%는 건강문제로 결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24〉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응답 수	비중
있다	48	52.2
없다	41	44.6
아프지 않았다	3	3.3
계	92	100

〈표 3-25〉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일수

(단위: 명, %)

	응답 수	비중
5일 이하	18	40.9
5일 초과 20일 미만	11	25.0
20일 이상	15	34.1
계	44	100.0

건강문제로 결근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수를 질문한 결과 5일 이하로 결근했다는 사람의 비율이 47.1%이고, 5일 초과 15일 이하로 결근했다는 사람의 비율이 23.5%로 전체의 70%는 건강문제로 결근한 일수가 15일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몸이 아픈데도 일하러 나간 적 있는가라는 absentism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52.2%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4.6%는 없다고 답하였으며, 아픈 적이 없었다는 응답도 3.3% 있었다.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일수를 질문하였다. 5일 이하 일했다는 사람이 40.9%였으며,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일수가 5일이 넘는다는 응답이 59.1%였다.

### 3. 우울증

다음은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울증 척도는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이용하였다. 이 내

〈표 3-26〉 우울증 여부

(단위: 명, %)

	응답 수	비중
우울증 아님	42	46.7
가벼운 우울증	26	28.9
중간 정도 우울증	18	20.0
심한 우울증	4	4.4
계	90	100.0

용을 보면 “다음의 증상들에 대하여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시달렸습니까?”라고 질문하고, 각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없었다’ 0점, ‘여러 날 동안(1~6일 미만)’ 1점, ‘일주일 이상(7~10일)’ 2점, ‘거의 매일(10일 이상)’ 3점으로 점수를 주고, 점수의 합을 구했다.

질문의 내용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가라앉은 느낌, 우울함 혹은 절망감”,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잠”, “피곤감, 기력이 저하됨”, “식욕 저하 혹은 과식”,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의 9문항이었다.

우울증 판정은 각 질문의 응답점수를 더해서 이루어진다. 총점이 4점 이하인 우울증이 아니고, 5점부터 9점까지는 가벼운 우울증이고, 10점부터 19점까지는 중간 정도 우울증, 20점 이상은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된다.

분석결과 우울증이 아닌 사람은 46.7%에 불과하고 과반수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을 가진 경우가 24.4%로 나타났다.

## 제5절 사회적 관계 및 생활습관

### 1. 사회적 관계

독거 가구의 경우 일단 집에 들어가면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다. 대화를 위해서는 일터에서 있거나 이웃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우선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볼 때, 하루 종일 남과 대화하지 않은 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 중 37.5%는 하루 종일 남과 대화하지 않은 날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2.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복수응답을 받았다.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의논하는

〈표 3-27〉 지난 1주일 중 하루 종일 남과 대화하지 않은 날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응답 수	비중
있다	36	37.5
없다	60	62.5
계	96	100.0

〈표 3-28〉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논 상대

(단위: 명, %)

	응답 수	비중
가족, 친척	18	15.0
친구동료 이웃	51	42.5
사회복지사, 종교인, 활동가 등	13	10.8
없다	38	31.7
계	120	100.0

〈표 3-29〉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즐거워할 상대

(단위: 명, %)

	응답 수	비중
가족, 친척	28	23.7
친구동료 이웃	59	50.0
사회복지사, 종교인, 활동가 등	10	8.5
없다	21	17.8
계	118	100.0

대상은 친구, 동료, 이웃으로 전체 응답의 42.5%였고, 다음은 없다는 응답이 31.7%로 높았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의논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15%에 불과하였다.

위 질문과 유사하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와 좋아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친구, 동료, 이웃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 친척이라는 응답이 23.7%였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 또한 17.8%로 결코 낮지 않았다.

## 2. 생활습관

다음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는 술담배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현재 담배를 피우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빈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주일에 4회 이상 마신다는 응답이 11% 정도였고, 일주일에 2~3회 마신다는 응답이 22% 정도로 33%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조적으로 전혀 술을 마시지 않거나 한 달에 1회 정도 마신다는 응답 또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3-30〉 흡연 여부

(단위: 명, %)

	응답자	비중
매일 피운다	51	56.0
가끔 피운다	6	6.6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15	16.5
피운 경험 없음	19	20.9
계	91	100.0

〈표 3-31〉 음주 횟수

(단위: 명, %)

	응답자	비중
1주일에 4회 이상	11	11.5
1주일에 2~3회	21	21.9
1달에 2~4회	24	25.0
1달에 1회 미만	11	11.5
전혀 안 마신다	29	30.2
계	96	100.0

다음은 하루에 몇 끼 먹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끼니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쪽방이나 독서실에서 거주할 경우 식사를 준비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일부 독서실에서는 유료로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를 사먹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한다. 조사결과 하루에 3끼를 다 먹는다는 응답은 36.8%에 불과했고, 심지어 하루 2끼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11%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하루 중 외식 횟수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독서실/쪽방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일하더라도 외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간식으로 때우거나 그냥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을 싸가기도

〈표 3-32〉 하루에 먹는 끼니 수

(단위: 명, %)

	응답자	비중
1끼	8	8.4
1.5끼	2	2.1
2끼	48	50.5
2.5끼	2	2.1
3끼	35	36.8
계	95	100.0

〈표 3-33〉 하루 외식 횟수

(단위: 명, %)

	응답자	비중
없음	54	56.8
0.5끼	5	5.3
1끼	19	20.0
1.5끼	2	2.1
2끼	12	12.6
3끼	3	3.2
계	95	100.0

한다고 한다. 조사결과 외식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 가까이 되었고, 1끼 외식이 아니라 0.5끼 단위로 응답한 사람이 7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0.5끼 단위로 응답한 사람들은 정식으로 한 끼 식사를 사먹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스낵으로 요기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루 끼니와 외식횟수를 교차해서 살펴본 결과 하루 몇 끼를 먹든지 외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하루 먹는 끼니 수만큼 외식한다는 응답 또한 있었다.

〈표 3-34〉 하루 끼니와 외식 횟수

	외식 안 함	0.5끼	1끼	1.5끼	2끼	3끼	계
1끼	6		2				8
	75.0		25.0				100.0
1.5끼	1						1
	100						100
2끼	29		10		9		48
	60.4		20.8		18.8		100.0
2.5끼		2					2
		100					100
3끼	18	3	7	2	2	3	35
	51.4	8.6	20.0	5.7	5.7	8.6	100.0
계	54	5	19	2	11	3	94
	57.4	5.3	20.2	2.1	11.7	3.2	100.0

## 제6절 우울증 결정요인

이번에는 저소득 1인 중장년 가구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우울증 결정요인을 살펴보겠다. 종속변수는 우울증으로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이용하여, 우울증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는 우울증 있음(1)으로 놓았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근로소득, 근로시간, 빚 여부, 차별/폭력에 노출 여부, 야간근무 여부, absentism, 끼니 수,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었다.

〈표 3-35〉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명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우울증 여부	PHQ-9에서 우울증 기준(5 이상) 이상이면 우울증
독립변수	성별	성별 더미변수(여성 1)
	연령	만 연령
	근로소득	로그 근로소득
	근로시간	한 달 동안 총 일한 시간
	빛 여부	빛 여부 더미변수(빛 없음 1)
	차별/폭력 노출	차별이나 폭력당함 1
	야간근무 여부	야간근무 1
	absentism	아픈데 나와서 일함 1
	끼니 수	하루 2끼보다 더 먹으면 1
	사회적 관계	하루종일 말 안 한 날 있으면 1

우울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정결과를 보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차별/폭력에 노출여부, 야간근무 여부, absentism 여부, 사회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별/폭력에 노출된 경우, 야간근무를 할 경우,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하루 종일 남과 말 한마디도 안 한 날이 있는 경우 우울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이 아닐 확률에 비해서 우울증일 확률에 대한 오즈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이나 폭력에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 오즈가 3.5배 높았고, 야간근무를 할 경우 오즈는 9.2배 높았고,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오즈는 3.5배 높았으며,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지낸 날이 있는 경우 오즈는 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6〉 우울증 결정요인

	오즈비	표준 오차	계수값
성별	1.69	1.47	0.61
연령	1.06	0.04	1.41
로그 근로소득	0.93	0.60	-0.11
근로시간	0.99	0.01	-1.13
빛 여부	0.85	0.54	-0.26
차별/폭력 노출	3.50	2.22	1.98**
야간근무	9.20	7.86	2.6***
absentism	3.50	2.09	2.1**
끼니 수	0.76	0.51	-0.42
사회적 관계	3.91	2.45	2.18**
상수	0.02	0.09	-0.92
관찰치	80		
pseudo R2	0.2984		

주: \*\*\* p<0.01, \*\* p<0.05, \* p<0.1.

## 제 4 장

### 요약 및 제언

그간 주거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노숙자에 대한 정착을 위한 사업과 쪽방 등 비주거시설에서 임대주택 등 더 나은 시설로의 상향이동을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서 진행되었으며, 계속해서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고 볼 수 있다. 둘째, 그간의 정책은 도심의 쪽방 거주민이나 고시원 거주자들을 외곽으로 이주시키는 것에 정책적 초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앞의 조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은 그 주거공간을 택한 이유가 싼 임대료 때문만은 아니고 위치가 일터와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저소득 임차가구 밀집지역에 양질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소득 임차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물리적 상태가 열악한 임대주택의 재생을 유도하여 임대주택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저 기준만 있고 강제력이 없는 최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거기본법」에는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미달 주택의 개선을 강제하거나 이를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선언적 의미만 있다. 「최저주거기준법」을 「주거기본법」에서 떼어내어 입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안전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정책이 필요하

다<sup>21)</sup>는 점은 녹색당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기존 자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맞도록 개량을 유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땅을 수용한 지역에 짓는 주택을 중대형 민간아파트 공급 중심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맞춘 소형 위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할 것이다. 서울 등 도심이나 역세권 지역은 고시원과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고시원과 쪽방 거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영리 성격의 사회주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입주자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

21) 녹색당(2018. 11), 「서울시당 논평 “종로 고시원 화재로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 조사』.
- 국토교통부·통계청·토지주택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2017),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지침서』.
- 녹색당(2018. 11), 「서울시당 논평 “종로 고시원 화재로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 안전보건연구원(2017),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 한국도시연구소(2017), 『중구 남대문로5가동 쪽방퇴거주민 실태조사: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 한국토지주택공사(2019),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 지침」.
-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표」.
- \_\_\_\_\_, 「한국복지패널조사 결과표」.



◆ 執筆者

-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거취약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실태 및  
사회적 지원망 조사

- 발행연월일 | 2019년 12월 26일 인쇄  
2019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인 | 배규식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미래기획 (044) 866-6331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